

한국장학재단 속 공공재정환수법 안내

모든 장학금(국가장학금 등)의 부정청구 방지

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하여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합니다.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는 모든 장학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. 한국장학재단은 앞으로 장학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익자에 대한 관리,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

* 단, 이공계지원법 및 보조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, 공공재정환수법 보충 적용

【장학금 부정청구 유형과 사례】

유형	사례
1. 허위청구	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 위조 또는 근로장학생이 근로를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, 타인이 근로를 대신하는 등 허위로 장학금 신청·지급받은 경우
2. 과다청구	졸업생은 근로 불가함에도 졸업 후까지 근로가 이어져, 전체 기간에 대한 근로장학금을 모두 받는 등 지급받아야 할 장학금보다 더 많이 수령한 경우
3. 목적외사용	등록금 목적 장학금을 받은 후 일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
4. 오지급	성적·이수학점 등의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장학금이 지급되었고, 나중에 오류 사실이 발견된 경우

환수금액 한눈에 보기



- 이자: 모든 부정청구 유형에 반드시 발생(20년 기준 1.8%)
- 제재부가금: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사용 시 발생(최대 5배)
- 가산금: 납부 기간 내 미납 시 발생(최대 5%)

환수금액 책정 사례

학생이 장학금 500만원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, 대학현장점검에서 환수대상으로 결정됨.

환수고지서를 받은 후, 납부기한 2개월 경과 시, 장학금 부정청구 유형별로 학생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?

【부정청구 유형별 환수금액】



학생이 물고 한국장학재단이 답하는 공공재정환수법



Q1 “재단이 대학으로부터 잘못된 성적 정보를 받아 장학금을 주었는데도 공공재정환수(오지급) 대상이 될 수 있나요?”



A1 “네, 될 수 있어요! 법률상 당초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지급이므로 환수대상이 될 수 있어요.”

Q2 “환수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”

A2 “대학으로부터 성적 통보를 받으면, 장학금 성적기준을 확인하고, 자격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장학금을 수령했을 시, 대학 및 재단에 신고 반환해야 해요.”

Q3 “만약 환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”

A3 “재단 및 대학 담당자의 연락에 성실히 답하세요.
납부금액을 낮추려면 즉시 모든 금액을 상환하세요.
(고지서 발부 전 상환 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면제 가능)”